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국무위원 ○○○ (외교부장관)
연 월 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 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3.4.)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됨에 따라 재외동포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업무를 재외동포청장이 행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재외동포청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

1)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변경(제1조, 제2조)

2) “외교부장관”에서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로 변경(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3) “외교부장관”에서 “주무관청”으로 변경(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 각 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2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4) “외교부장관에게”에서 “주무관청에”로 변경(제4조의2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각각 “주무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각각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주무관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교부장관”을 “주무관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 제1호 중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하고, 같은 뒤쪽 제3호, 제5호 및 제6호 중 “외교부장관에게”를 각각 “주무관청에”로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외교부에서 재외동포청으로의 업무이관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교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의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의 개정서식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 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1. 정관 1부 2.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出捐)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4.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외교부·재외동포청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사단(재단)법인 00000(영문명: 00000)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직인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과의 관계

법 인	명칭	(한글)	전화번호
		(영문)	
	소재지	(한글)	
		(영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2에 따라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확인서 작성	→	확인서 발급
--------	---	-----	---	-----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외교부·재외동포청

Certificate Number: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Corporation

1. Entity Name and Type:

2. Registered Address:

3. Date of Authorization:

4. Representative of Entity

☐ Name:

☐ Date of Birth:

☐ Address:

This is to certify and declare that this entity, a nonprofit corporation, has been duly established according to Article 32 of Korean Civil Law and Article 4 of Regulations on Formation and Oversight of Nonprofit Corporations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Overseas Koreans Agency.

Date of Issue: MM/DD/YYY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Commissioner of the
Overseas Koreans Agency

직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설립 허가일	설립허가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와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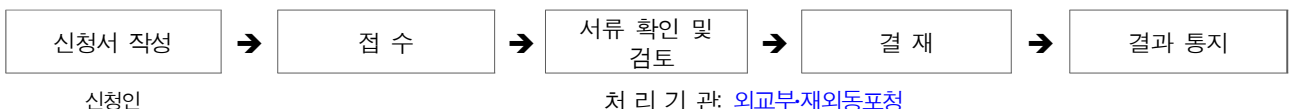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 정관 개정안 1부 3. 정관 변경과 관련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수수료
	1.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없음

처 리 절 차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해산 연월일

해산 사유

청산인 대표권의 제한 내용(대표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민법」 제86조제1항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 처분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3. 해산 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1부 5. 재단법인이 정관에 따라 해산한 경우로서 이사회가 해산을 결의하였을 때에는 그 결의를 한 이사회 회의 회의록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서류확인 및 검토	→	결 재
신청인				처리기관 : 외교부·재외동포청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7일
신청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대 표 자 (이사·청산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처분재산	종류 및 수량			
	금액			
	처분방법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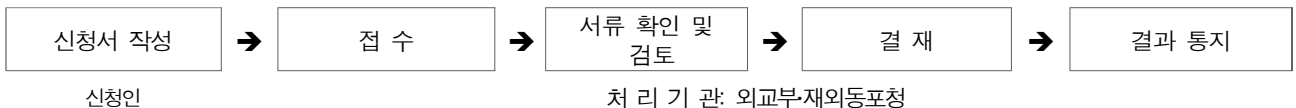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의 정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는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청산종결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즉시
청 산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청산법인	명칭	전화번호		
	소재지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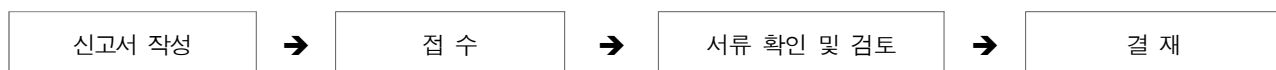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외교부장관
재외동포청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없음
---------------	------------	-----------

처 리 절 차



처 리 기 관: 외교부·재외동포청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	<u>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에 따라 <u>외교부장관</u> 이 주무관청 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 포청장</u> ----- ----- -----.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 법」에 따라 <u>외교부장관</u> 이 주무 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비영리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허가,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 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 <u>외교부장관 또는 재 외동포청장</u> ----- ----- ----- ----- ----- -----.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 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 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 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 ----- ----- ----- -----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항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①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 3.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하였

----- 외교부장관
또는 재외동포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

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

1. ~ 3.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

③ 주무관청-----

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설립발기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① 외교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영문으로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제4조제3항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를 비영리법인에 발급해

-----.

④ 주무관청-----

-----.

제4조의2(영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확인서의 발급) ① 주무관청

-----.

② -----

-----.

③ -----
주무관청-----

야 한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
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허
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로
서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외교부장관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
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
라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
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
을 외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
고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

----- 주무관청에 --
-----.

② -----

-- 주무관청에 -----
-----.

③ 주무관청-----

-----.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①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
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
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 4.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정관 변경
허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
일 이내에 정관 변경허가 여부
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
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
음 각 호의 서류를 외교부장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① 외교부장관은 「민
법」 제37조에 따른 법인 사무
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에 관
계 서류·장부 또는 그 밖의 참

주무관청에 -----
--.

1. ~ 4.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

--.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

----- 주무관청에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감독) ① 주무관청-----

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① 주무관청-----
-----.

② 주무관청-----
-----.

제10조(해산신고) ① -----

----- 주무관청
에 -----.

1. ~ 5.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 외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잔여재산 처분허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 「전자정부

----.

제11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① -----

----- 주무관청에 -----
-----.

1. 2. (현행과 같음)

② 주무관청-----

-----.

제12조(청산 종결의 신고) ① ---

----- 주무관청에 -----.

② 주무관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외 <u>교부장관</u>은 다음 각 호의 사무 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 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 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략)	----- ----- ----- -----.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u>주</u> <u>무관청</u>----- ----- ----- ----- ----- -----. 1. ~ 5. (현행과 같음)
--	---